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

-한·일 FTA 협정추진방향-

한·일 FTA 추진은 중국이 포함되는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구상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전략의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한 · 일 FTA 체결은 한국의 대일 의존적 사업구조(특히 기술 의존적)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일본 무역수지적자 증가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일본이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양국간 정치,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에 미칠 FTA의 긍정적 요

인도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일본 국민들의 한국 Passing 경향을 감소시키고 이웃 나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의 FTA 체결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형적 형태일지라도 일정 부문의 예외와 유예 등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FTA 체결은 투자협정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크지 않고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가 이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한·일 FTA의 영향계측 결과(KREI, KIEP, KIET 등)에 의하면 한국측이 관세 인하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에 투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 기준과 규격의 조화 등을 포함시킬 경우 장기적으로는 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FTA 체결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철폐협상에 주력해야함을 의미하며, 사전적으로 기반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추정한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순수한 가격 차와 관세철폐 효과를 의미한다. 품질이 차이와 비관세장벽에 의한 교역제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한·일 FTA로 수출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조화시키는 데에 협상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동식물 검역, 통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비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일류는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과, 배, 감귤 등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과일에 대하여 일본은 까다로운 식물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작황이 좋은 경우 일본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도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역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애 부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훈증 소독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일본의 상관습(규격, 품질, 품종, 거래 관행 등)은 매우 폐쇄적으로 관세철폐로 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 상관습 등에 대한 사전분석 및 조화작업 등 정지작업 요구된다.

예를 들면 식품제조공전의 차이(예,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등 한국의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격 및 표시제도 또한 상이하다. 축산질병 발생 시 수출금지 지역의 범위 등도 양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제적인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우리나라 농산물과 일본산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가 요구할 개방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산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품목들은 개방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사실상의 강제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일본공업규격(JIS)과 일본농업규격(JAS), S마크, G마크 등이 있다. 식료품과 임산물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농림규격·품질표시법(JAS법)은 1999년 의회에서 개정되었다.

개정이 주요 내용은 식품표시의 확충과 유기농산물 및 식품 검사

- 인증 제도를 창설하는 것과 신선야채 9품목에 대해 의무화 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전품목으로 확대된 것이다. 유기식품의 검사·인증 제도를 JAS법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농산품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된 표준규정에 의해 포장 및 상표부착, 표시 등의 규제를 받

고 있으며 수목보호법, 동식물검역법 등 상당히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요구받고 있다.

기술 및 표준 규정이 국제적 기준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경우가 많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무지 수입규제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야끼도리의 경우 가축전염병 관리법에 의한 검역조치, 야끼도리 제조에 쓰인 파에 대한 식물검역 조치, 여기에 사용되는 대나무젓가락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검사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에 속한다.

수량제한 제도는 수입할당 67품목(1999년 HS4단위 기준), 관세 할당 38개 품목(1999년 HS4단위 기준)이 있다.

수입절차상의 비관세 장벽은 사전확인제, 특별승인제, 수입창구 제한 제도(일담배, 소금 등) 등이 있으며 기준수입가격제도, 관세율 특별 기산제도 등 가격제한에 의한 비관세 장벽도 존재한다. 수입할당제도 해당 품목은 대부분이 수산물이다.

차액관세제도 대상품목은 돈육, 밀크 및 크림, 버터밀크, 요쿠르트, 케피아 기타 발효시킨 것이나 또는 산성화된 밀크 및 크림, 유장, 밀크에서 얻은 버터 기타 유지 및 유제품, 완두콩, 팥, 강낭콩, 소맥 및 메스린, 대맥 및 나백, 라이소맥, 소맥분 및 메스린분, 쌀가루,

보리가루, 라이소맥분, 전분 및 이눌란, 낙화생, 곤약구이모, 쇠코렛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등이다.

맥아 엑기스 및 전분, 밀, 전분 또는 맥아 엑기스의 조제식료품, 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시킨 조제식료품, 커피를 주로 한 조제

의 돈육 관련 관세제도는 이러한 부위의 대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농림수산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기본 입장은 농업분야를 예외로 하고 WTO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기본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0세율로 양허된 480여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협정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싱가포르 산업 가운데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 아니며 일본이 우려할 만한 수출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돼지고기, 오렌지 등 극히 일부 농산물의 양허안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등 농산물이 협상에 있어서 민감한 부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일간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일본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한 부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개방 폭 확대 요구를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와 우리나라의 취약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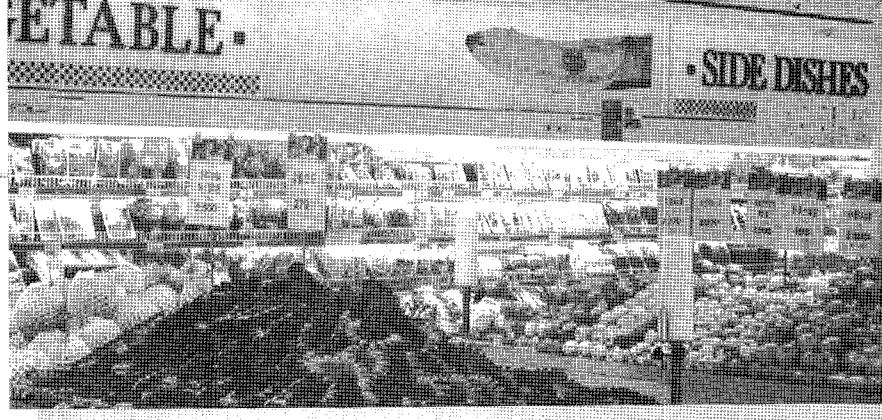
한국은 농업부문을 전략적 협상 분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추진에 있어
일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농림수산물에 대한
개방폭 확대요구를 통해
수출증대와 우리나라의
취약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품, 밀크의 천연조성분의 함유량의 합계가 건조상태로 전체중량의 30%이상인 조제품 등 많은 농산물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가 냉동, 냉장육 및 부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이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돈육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내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후지 및 전지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본



제3국과의 FTA 체결 고려

한·일 FTA 협상은 한국이 앞으로 거대 경제권과 추진할 FTA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통상협상, FTA 체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FTA 체결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 조항도 한·중 FTA 문제나 기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손실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일 FTA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일 FTA가 동북아 지역에 미칠 역학구도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중·일 3국의 FTA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2003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

동북아 FTA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농업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농업부문에 대하여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예 후안강 칭화대 교수, 서장문 중국 국제경무연구원 교수 등).

미국 등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당사국들의 견제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은 한·일 FTA에 대하여도 미국 기업

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한·일 FTA로 인한 새로운 차별에 필적할 만한 시장개방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국 등 기존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입장과 향후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증대에 제약성 및 수입증가 품목 고려

한·일 FTA 체결은 최근 수출이 많은 기존의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추가적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돈육(1999년 시장점유율 13.4%)과 소주(알콜성 음료 시장의 4.3%), 국화(13.0%) 등 일본 수입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품목은 수출 증대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이(100%), 가지(99.7%), 토마토(76.2%)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은 일본산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품질 경쟁력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밤, 송이버섯 등은 수출규모가 큰 품목이나 국내 수급 사정상 수출 증대가 제한될 전망이므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 철폐가 수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현행 실행세율이 높은 품목 베이커리 반죽, 감귤, 소주, 김치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조사와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일 FTA는 한국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담배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FTA로 인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녹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녹차 산업을 비교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한·일 FTA로 인한 녹차와 녹차제품사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협상 및 국내대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